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캄보디아은행

2. 조치일 : 2023. 5. 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감사,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감사,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업무는 관리 및 감시대상이 되는 업무와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신한캄보디아은행은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결 규정상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을 법인장 결재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어 감사조직이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담당 임원이 회계, 자금,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감사업무 수행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조직의 업무 및 성과 평가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임원을 평가자에서 제외하는 등 성과 평가상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모행 내규 「사고예방지침」에 따르면 국외점포는 [별표3] 국외점포 사고예방대책을 참고하여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외점포 준법감시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모행 준법감시부로 보고하여야 하나,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사고예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모행에서 정한 사고예방대책이 각 업무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지 않고 있고 모행에서 마련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A)를 통해 금융사고가 접수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모행에 보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

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더라도 문제여신에서 발생할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22.9월말 현재 신한캄보디아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으로는 은행이 여신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여신이 은행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지사정을 반영하여 LGD 값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신한캄보디아은행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관리부가 총리스크한도 설정 및 한도소진현황, 금리·유동성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총리스크한도 관리나 위기상황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모행이 제공한 총리스크한도 소진현황과 금리·유동성 위기상황분석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하고 의결받는 등 리스크관리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리스크관리부 산하 리스크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리스크관리부가 보좌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에 대한 관리가 일부 부실하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총리스크한도 소진현황 및 금리·유동성 위기상황결과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